

조세 · 재정 BRIEF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09. 30(화)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제도 활용연구

I 배경 및 문제점

GATT/WTO 체제를 중심으로 진행된 국제교역이 최근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FTA 체제가 있다. FTA가 확대되면서 우리나라는 보다 많은 국가들과 관세 부담 없이 자유롭게 교역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관세장벽 철폐에 따른 수입증가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외국의 공정하지 못한 무역정책을 통해 우리나라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준다면 이는 시정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FTA 체제가 확대되면서 자유무역에 의한 교역이 크게 증가할수록 공정한 무역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점점 중요해지는 상황이다.

공정한 무역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적 장치로는 반덤핑제도와 상계관세 제도가 있다. WTO 회원국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WTO 협정에 더하여 복수의 FTA 협정상의 의무를 새로이 부담하고 있어 상당한 실무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FTA 체제 확대라는 경제적 환경 변화를 바탕으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와 관련하여, 우리 조사당국의 기능 및 역할 강화, 조사 대응 과정을 통한 시사점, 그리고 사법심사의 전문성 강화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II

조사 및 분석결과

1.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의 궁극적 증가

새로운 FTA 체제의 확산과 동시에 상대국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의 빈도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상황 변화이다.¹⁾ FTA를 체결한 이후 외국 정부 입장에서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FTA 상대국 상품의 국내유입을 최대한 ‘합법적’으로 차단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2011년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냉장고에 대하여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동시에 진행한 사례와 연이어 2012년 한국산 세탁기에 대하여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동시에 진행한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교통량이 증가하면 교통사고도 따라서 증가하듯이 FTA 체결로 인하여 교역 당사국 간 교역규모가 증가하게 된다면 이에 수반하여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분쟁의 증가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특히 반덤핑 조사 및 상계관세 조사가 이제 각국 정부에 남겨진 사실상 마지막 국내 시장 보호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상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국내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2. FTA 관련 절차적 문제 및 보완

FTA 체제의 도입과 함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부분에서 가장 큰 부담을 초래하는 사항 중 하나는 각 FTA가 여러 상이한 조항들을 도입하고 있어 이를 이행하는 조사당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실무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발효한 9개의 FTA만 살펴보더라도 전체적인 조사의 기본적인 틀은 WTO 협정에 따르고 있지만, 실제 조사가 진행되는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모두 상이한 내용을 담고

1) 이와 관련하여 박순찬(2008)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FTA 체결이 반덤핑 조사건수를 증가시킨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에 따른 정책시사점으로 박순찬(2008)에서는 FTA 협정에 반덤핑 적용을 면제하는 규정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있다.

예를 들어, WTO 반덤핑협정 개정 논의에서 쟁점인 제로잉 금지와 관련하여 싱가포르, 인도, 터키와의 FTA 협정에서는 제로잉 금지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만 제로잉 금지를 반대하는 미국, EU를 비롯해서 칠레, EFTA, 페루와의 FTA 등에서는 제로잉 금지 규정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제로잉 금지 규정에 대해서도 FTA 별로 차이가 있다. 최소부과 원칙을 적용했던 EU를 비롯해서 싱가포르, EFTA, 인도, 페루, 터키와의 FTA 협정에서는 최소부과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최소부과 원칙에 반대하는 미국과의 FTA 협정에서는 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재심종료에 대해 인도, EU, 그리고 터키와의 FTA 협정에만 포함되어 있다.

조사 개시 전 사전 통보도 FTA 협정별로 차이가 있다. 인도의 경우에는 조사 개시일로부터 적어도 10일(근무일)전에 통보를 명시하고 있지만, EU와 터키의 경우에는 조사 개시일로부터 15일전 서면통보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반덤핑 조사가 실시될 경우 EFTA, EU, 미국 등의 FTA 협정문에서는 사전 협의를 명시하고 있지만, 다른 FTA에서는 이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가 20~30개의 FTA를 체결한다면, FTA 별로 모두 상이한 반덤핑 관련 특례규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FTA 체제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조사당국의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FTA 별로 규정과 절차를 알고 있어야만 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즉, 우리 조사당국은 구체적으로 반덤핑 조사가 어느 나라 상품에 대하여 진행되는지 여부에 따라 조사의 기한, 조사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요건, 조사방법론 등이 모두 상이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반덤핑 조사에서는 국내 산업피해와 덤핑규모 판정도 중요하지만, 진행 절차와 관련하여 협정과 달리 진행될 경우에는 WTO에 제소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만약 인력과 자원이 풍부하다면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규모에 비하여 조사당국의 인력과 자원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조사당국의 인력과 자원의 확충, 그리고 기본적인 체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만약 인력 충원과 체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FTA 체제로 인한 새로운 실무적 부담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조사당국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III

정책제언

1. 우리 조사당국의 기능 및 역할 강화

가. 기존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에서의 시사점 도출

1)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최종 판정문 작성

현재 우리 무역위원회가 도출하는 반덤핑 판정 조사 최종 판정문은 다른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지나치게 간략하다. 물론 반덤핑협정 어디에도 최종 판정문에 어떠한 내용을 담거나 어떠한 설명을 제시하라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간략한 최종 판정문 그 자체로 WTO 반덤핑협정 위반은 아니다. 그러나 반덤핑협정 제12.2조는 각 회원국 조사당국은 예비판정과 최종판정을 도출하여 공표함에 있어 상대방 이해 당사자가 최종결론의 근거가 된 법적 사실적 이슈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세히 설명을 제시하여야 한다.²⁾ 반덤핑 조사는 상당히 복잡한 법적, 사실적 내용과 이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따라서 그 결과물인 최종 판정문 역시 다양한 법적, 사실적 내용에 대한 검토, 분석, 평가를 담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를 간략히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상당하다. 그런데 우리 조사당국의 최종 판정문이 이러한 충분한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지 때로는 다소 의문스러울 때가 있다. 조사별로 다소 상이한 점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우리 조사당국의 최종 판정문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이 간략히 정리되어 있을 뿐이며 그러한 결론을 도출하는데 사용된 논거, 선례, 분석, 상대방 주장에 대한 코멘트 등이 빠져있거나 충분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보니 전체적인 분량 면에서 일단 다른 주요국의 최

2) 반덤핑협정 제12.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2.2 Public notice shall be given of any preliminary or final determination, whether affirmative or negative, of any decision to accept an undertaking pursuant to Article 8, of the termination of such an undertaking, and of the termination of a definitive anti dumping duty. Each such notice shall set forth, or otherwise make available through a separate report, in sufficient detail the findings and conclusions reached on all issues of fact and law considered material by the investigating authorities. All such notices and reports shall be forwarded to the Member or Members the products of which are subject to such determination or undertaking and to other interested parties known to have an interest therein...

중 판정문과 상당한 차이가 난다. 이러한 부분은 대부분 우리 조사당국의 조사담당 인력과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FTA 체제가 확대되면 이러한 인력과 자원의 제한이 더욱 악화된다면 충실한 최종 판정문 작성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충분하고 상세한 설명과 논거를 담지 않은 최종 판정문은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먼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나치게 소략한 최종 판정문은 그 자체로 반덤핑협정 제12.2조의 요건에 위반될 수 있다. 외국 수출업자가 우리 정부의 최종 판정문에서 내려진 평가 근거를 자신들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주장할 경우 우리 판정문 자체가 지나치게 간략히 작성되어 있으면 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반박하기 쉽지 않다. 특히 개조식 문언이나 공문에서 사용하는 문투에 익숙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서술식 표현으로 영어로 번역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그 간략성이 현저해 질 수 있다.

둘째, 지나치게 간략한 최종 판정문은 무엇보다도 이 분쟁을 담당하는 패널 및 항소기구에 부정적 인식을 심어준다. 반덤핑협정 제17.6조는 애매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에 담당 패널은 가급적 조사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는 취지의 규정도 두고 있다.³⁾ 그러나 최종 판정문이 지나치게 간략할 경우 패널이나 항소기구는 기본적으로 조사당국이 반덤핑협정이 요구하는 충분한 검토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아예 충분한 논의 자체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판정의 논거 자체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분쟁해결 절차에서 제기되는 입증책임과 관련되는 문제이다. 최종 판정문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반증이 없는 한 일단 조사당국이 해당 사항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검토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결론이 도출되었다는 전제에서 WTO 심리가 전개된다. 그러나 최종 판정문에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사당국에 의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실제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조사 과정에서의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지만, 다양한 의사교환과 논의 내용들이 문서로 작성되지 않았거나 공개될 수 없는 부분도 있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여 어려운 길을 걷게 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최종 판정문의 내용은 충실하고 체계적으로 작성되는 것이 필

3)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7.6 (i) in its assessment of the facts of the matter, the panel shall determine whether the authorities' establishment of the facts was proper and whether their evaluation of those facts was unbiased and objective. If the establishment of the facts was proper and the evaluation was unbiased and objective, even though the panel might have reached a different conclusion, the evaluation shall not be overturned.

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이 영문으로 번역이 되었을 때 어떠한 내용과 용어로 전달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아울러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때로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나 결국 우리 판정문의 국제적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 이해 당사자의 비밀정보 보호

조사당국 입장에서 반덤핑 조사와 상계관세 조사에서 부딪히는 중요한 실무적인 문제 중 하나는 각 이해 당사자가 제출하는 비밀정보의 보호이다.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각 수출기업과 국내기업이 제공하는 수많은 문서의 상당 부분은 비밀정보이다. 상계관세 조사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조사대상 국가의 정부가 제출하는 민감한 비밀 정보 역시 상당하다. 조사당국은 반덤핑협정 제6.5조 등에 의해 이러한 비밀정보를 충분히 보호할 의무가 있다. 보조금협정에서도 상계관세 조사와 관련하여 유사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보호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이들 조항에 대한 위반을 구성할 뿐 아니라 조사대상 기업이나 정부가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지 않을 것이므로 조사당국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곤란해진다.

사실 반덤핑 조사나 상계관세 조사가 간헐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비밀자료 보호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조사당국의 담당 조사관의 개인적인 주의를 통하여 안전하게 조사를 진행하여 나갈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 복잡한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거나 이해 당사자의 숫자가 증가하게 되면 비밀정보 보호에 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비밀정보 공개나 미보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반덤핑협정은 조사 관련 내용을 최대한 상세히 이해 당사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⁴⁾ 또 한편으로 조사 과정에서 제반 비밀정보는 최대한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양자는 일종의 상충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두 의무를 동시에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비밀정보를 관리,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데 있어 체계적인 제도와 장치가 필요하다. 미국이나 EU에서 이와 관련해서 복잡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앞으로 반덤핑 조사 및 상계관세 조사를 본격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조사 과정에서 제공되는 비밀정보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고 지침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4) 가령 반덤핑협정 제6조와 제12조의 제반 규정이 그러하다.

3)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초점

반덤핑 조사와 상계관세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당국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절차적 정당성(procedural due process of law)에 대한 강조 분위기이다. 최근 WTO 분쟁의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적지 않은 협정 위반 상황이 사실 어떠한 결론을 도출하였는지 여부보다 그러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반덤핑협정이나 보조금협정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절차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래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사실 대부분의 국가의 조사당국은 어떠한 결론이 타당한 결론인지 여부에 초점을 두고 반덤핑 조사나 상계관세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결론이 타당하면 전체적으로 조사 자체도 타당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부분은 올바른 결론을 중시하는 대륙법계 국가의 법문화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반면에 영미법적 사고방식에서는 실체적 위반 여부나 범법행위와 동일하게 절차적 요건의 준수여부에 중요한 비중을 둔다. WTO 협정을 운용하고 분쟁해결 절차를 적용하는 데에도 영미법적 사고방식이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다. 미국을 비롯한 협상과 분쟁의 주도국들이 이러한 법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반덤핑협정과 보조금협정 어디에도 명문으로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용어는 없다. 그러나 이들 두 협정에 산재하는 여러 용어와 문구를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을 내포하고 있거나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패널 및 항소기구가 확인하여 이를 각 조사당국에 대하여 새로운 준수규범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조사당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여 주고 있다. 어떠한 결론을 도출하는지 여부보다 어떠한 과정을 거쳐 그러한 결론이 도출되는지가 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사실 최근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 간 진행된 백상지 반덤핑 조사에서는 최종판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WTO 패널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였으나 사소한 절차적 규정의 위반이 우리 측의 패소로 이어지게 되었다. 결국 사소한 절차적 규정의 위반이 조사의 본질적인 부분을 무력화시킨 것이다.

이들 협정에 나열된 모든 요건을 충분히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 협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당연히 요구되는 사항들은 우리 조사당국이 철저히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아직 우리 조사당국의 경우 구체적인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움직임은 미미한 편이다. 앞으로 본격적인 조사와 이로 인한 분쟁을 염두에 두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다각도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사과정에서의 가이드라

인을 도입하여 이를 조사관들에게 숙지시키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4)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사

반덤핑 조사 및 상계관세 조사 분쟁은 모두 WTO에서 관장하고 심지어 이들 조사를 WTO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반덤핑 조사 및 상계관세 조사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각 WTO 회원국의 조사당국이 자국 법령에 따라 진행하는 국내 행정조사 절차이다. 모든 조사는 이들 조사당국의 몫이며 WTO가 이들 조사에 관여하지는 않는다.

일방 WTO 회원국 정부의 조치로부터 피해를 입는 여타 회원국은 이를 WTO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⁵⁾ 이러한 회부로부터 비로소 WTO의 개입이 시작되고⁶⁾ 반덤핑 조치 또는 상계관세 부과조치에 대한 WTO 분쟁이 되는 것이다.

반덤핑 조사와 상계관세 조사 자체에 1년 정도, 패널 및 항소기구 판정에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결국 최초 조사시점부터 계산하면 3년이 지난 후에야 그 위반 여부가 확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사당국이 조사를 진행하는 단계에서는 설사 피조사 수출기업이나 수출국 정부가 특정한 조사방법이나 결정이 반덤핑협정이나 보조금협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믿더라도 이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하여줄 방법이 없으며 조사당국의 조사를 차단할 방법도 없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는 사실상 조사당국의 재량권이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WTO 반덤핑협정과 보조금협정이 조사 과정에서 적용되는 절차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사실관계 중심으로 사안별로 이루어지는 반덤핑 조사 및 상계관세 조사의 특성상 각 조사단계에 있어 조사당국에 부여되는 재량권의 범위는 실로 상당하다. 이러한 재량권의 행사가 설사 일방 이해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더라도 WTO 반덤핑협정과 보조금협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여전히 협정과 합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조사당국의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한할 것인지는 반덤핑협정 및 보조금협정 전체의 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사결정이다. DDA 규범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이슈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조사당국의 재량권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를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이다.

5) DSU 제1.1조, 제3.2조, 제3.7조 각각 참조

6) DSU 제4조 참조

우리 수출기업과 우리 정부가 외국에서 반덤핑 조사나 상계관세 조사에 직면하는 것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다. 조사의 개시 여부는 오로지 수입국의 국내 기업과 수입국의 조사당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이해관계를 방어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수입국으로서 조사를 진행하는 맥락에서는 우리에게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다. 일종의 소극적, 수동적 접근방법으로 다른 회원국 수출기업들이 WTO 규범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한다고 전제하고 혹시 그러한 규범을 위반하게 되면 해당 수출국과 양자적 교섭으로 때로는 WTO 차원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협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WTO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하는 것이다. 반면에 적극적, 능동적 접근방법으로 외국 수출기업의 WTO 규범 위반 여부나 불공정교역 참여 행위 여부에 대하여 수입국인 '우리 정부가 스스로 조사를 통하여 결정하고' 이로부터 WTO 반덤핑협정과 보조금협정이 부여하고 있는 정당한 재량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국내 시장을 불공정무역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WTO에서 이러한 구제 조치를 얻기까지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일단 WTO 협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FTA 체제의 확산으로 인한 관세 및 여타 수입 장벽의 철폐는 바로 이러한 적극적, 능동적 접근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EU, 중국, 인도 등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주요 교역국은 이미 이러한 방식의 접근법을 택하고 있다. 이들과 대등한 차원에서 국제교역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접근법을 택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여야 하는 시점이 도래하였다고 생각한다.

나. 무역위원회의 역할 증대와 독립된 조사당국 설립 필요성

1) 무역위원회 강화

앞서 언급하였듯이, FTA 체제 대두와 관련하여 곧바로 제기되는 문제는 바로 우리 정부의 조사당국으로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무역위원회의 역할이 앞으로 급속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역위원회의 인력과 예산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가 수반되어야 한다.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미국, 중국, EU 등과 대등한 수준의 조사당국 도입은 국력과 여건의 차이 등을 감안할 때 분명 힘든 점이 있다. 그러나 점차 밀접해

지는 이들 국가와의 교역 관계에서 최소한 요구되는 수준의 무역구제 조사를 담당, 진행할 수 있는 수준의 조사당국의 도입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최소한의 수준의 무역구제 조사를 담당하기 위해서도 현재 적지 않은 수준의 인력과 예산 등의 보강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앞서 FTA 협정별 차이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현재 복수의 FTA가 동시다발적으로 체결됨에 따라 우리 무역위원회의 업무 강도는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업무 진행 방식도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 가령 우리 무역위원회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반덤핑 조사가 어느 나라 상품에 대하여 진행되는지 여부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조사의 기한, 요건,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상황은 WTO 반덤핑협정 하나만을 통한 단일의 조사규범을 적용하여 온 지금까지의 조사와는 확연히 구별된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상계관세 조사는 한 번도 시작한 적이 없다. 미국, 중국, EU에 상응할 수 있는 상계관세 조사를 위해서는 향후 이를 위한 인력과 예산 등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현실적인 이유이다.

앞서 살펴본 인도의 경우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여 준다. 인도의 반덤핑총국(DGAD)은 덤핑 조사와 산업피해 조사 등 반덤핑 조사와 관련한 일체의 실무를 관장하면서 미국, EU 등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인력과 자원이 열악하면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실제 최종판정에는 다양한 흠결과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여러 국가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결국은 곧바로 WTO 제소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상무부의 무역구제 조사부분을 대폭 강화하고 있지만 폭증하는 미국 및 EU 상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WTO 분쟁에 대처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감지된다. 이와 같이 무역구제 조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는 우리나라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독립된 조사기관 설립

인력 충원과 체제 정비와 함께 보다 본질적인 문제로 우리나라 무역위원회의 위치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즉, 우리 무역위원회를 현재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그대로 존치시킬 것인지 아니면 실제 최종적인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산하로 옮길 것인지, 아니면 차제에 별도의 기관으로 독립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 문제이다. 현재는 무역위원회가 실제 무역구제

조사를 실시하고 최종적인 부과권한은 관세 부과 업무의 일환으로 파악하여 기획재정부에 부여하는 이원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특별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며 159개 WTO 회원국은 모두 다양한 형태로 자국의 조사당국을 운용하고 있다. 이 문제와 같이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내포하는 사항의 경우 어떠한 방식을 취하든지 여기에는 장단점이 따른다.

지금과 같은 이원적 구조를 취할 경우 그 장점은 관세 부과 문제에 관한 한 제도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최종적인 부과 결정에서 해당 무역구제 조사의 구체적 사안 이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국내외적 상황을 기획재정부가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된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조사의 실무주체와 부과주체가 서로 달라 여타 정부가 우리 정부를 WTO 분쟁해결 절차에 제소하는 경우 두 부처가 모두 제소의 주된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경우 실제 조사를 실시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최종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제소의 대상이 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적지 않은 실무적/정무적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 한편 무역위원회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최종판정과 상이한 내용의 관세 부과 조치가 내려진다면 이로 인한 분쟁 발생 시 과연 어느 부처의 책임인지 여부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한 우리 정부의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 등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패소 판정이 난 이후에 해당 판정을 국내적으로 이행하는 경우에도 그 이행의 주체가 어느 부서가 되는지를 둘러싸고 혼돈스러운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세부적인 부분은 조사의 건수가 증가하고 내용이 복잡해짐에 따라 더욱 그 문제점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러한 이원적 구조를 지양하고 단일부처의 책임 아래 두는 일원적 구조를 취하면 분명 효율적인 조사 진행과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무역구제 조치가 국내 산업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힘들어진다면 또는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들어진다는 단점 역시 제기된다.

또 다른 이슈 중 하나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무역위원회를 현재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부서로 둘 것인지 아니면 독립적인 기구로 전환시킬 것인지 여부이다. 이 문제 역시 각각 장단점을 갖고 있다. 현재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위치할 경우 국내 산업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정보교환에 유리하다는 중요한 장점이 있다. 무역구제제도가 국내 산업과 유리될 수 없고 또 무역구제제도의 핵심 중 하나가 국내

산업에 대한 산업피해 조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를 조화롭게 진행하는 것에 분명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점차 무역구제 조사의 중심이 절차적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여부로 옮겨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조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대내외적으로 강조하는 데 있어 이와 같이 직접 이해 당사자인 부서가 조사당국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에 대한 외국의 시각이 반드시 곱지만은 않을 것이다. 조사건수가 많지 않거나 또는 국제적 관심이 적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향후 조사의 질과 양 둘 다 급격히 증가할 경우 이러한 불명확한 체제는 우리 정부의 협정상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외국 정부의 다양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특히 현재의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교섭의 역할도 동시에 맡고 있으므로 협정의 협상, 이행, 국내 산업에 대한 지원과 보호, 무역구제 조사의 진행을 모두 담당하게 될 경우 이러한 중립성, 독립성 문제는 특히 대두되게 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당한 반덤핑 조사 및 상계관세 조사의 경우도 보호무역주의 조치로 비난받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당국을 독립된 기관으로 설립할 경우 그로부터 초래되는 문제점 역시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독립된 기관의 경우 실제 국내 산업의 이해관계나 외국 정부와의 협상 창구를 담당하고 있는 여타 정부부처와 유리되게 되어 이들과의 긴밀한 유기적 협조를 기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새로운 독립기관을 창설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과 인력의 문제 역시 새로이 대두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무역환경 내에서 향후 활발한 무역구제 제도의 운용을 위해서는 독립된 조사당국의 설립이 궁극적으로는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를 위해서는 독립된 기관의 설립을 통해 여기에 종사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함양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2.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대응 과정을 통한 시사점

가. 반덤핑 조사 대응 과정을 통한 시사점

1) 정부 역할의 상대적 한계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수출국 정부의 역할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WTO 반덤핑협정에서는 수입국의 독자적인 재량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영역과 그렇지 못한 영역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가 체결한 FTA에서 반덤핑 조사 관련 정부 간 협의 채널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가령 한·미 FTA는 반덤핑 조사 개시 전 사전 통지 및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격과 물량 합의에 의한 조사 중지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앞으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이용 가능한 정보(facts available) 원칙 적용의 위험성

일단 반덤핑 조사에 대응하기로 결정을 한 이상 조사당국의 조사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협조를 제공하여 반덤핑협정 제6.8조의 이용 가능한 정보(facts available)의 적용을 회피해야 한다. 협정 제6.8조는 피조사기업이 필요한 자료를 적절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조사당국이 자신이 원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최종판정을 도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조사당국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최근 반덤핑 관련 WTO 분쟁의 상당수가 이 원칙 적용의 타당성을 두고 전개되고 있다. 문제는 일단 자료의 미제출이나 비협조가 확인되면 조사당국이 이 원칙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더라도 WTO 분쟁해결 절차에서 우리측 입장이 지지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추가적인 자료는 추후에 제출하거나 또는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세한 소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 WTO 제소로 이어지더라도 우리측 입장이 용인될 가능성은 훨씬 높아지게 된다.

3) 반덤핑협정상 모호한 부분을 이용한 외국 조사당국의 자의적 조사 가능성

우리 수출기업들의 경우 반덤핑협정에 따른 각국 조사당국의 반덤핑 조사가 항상 공정하고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재의 WTO 반덤핑협정은 기본적인 조사의 틀은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조사방식은 각 회원국에 위임하기 때문에 각국 조사당국은 이를 자국 기업에 유리하게 그리고 우리 수출기업에 불리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 수출기업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대해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현상

은 미국, EU 등의 우리 기업에 반덤핑 조사에 적극적인 국가에서 발견되고 있다.

4) 재심 절차의 적극 활용

반덤핑 원심조사 절차만큼이나 재심 절차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일단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추후 연례재심, 상황변화재심, 중간재심, 신규 수출자 재심, 일몰재심 등 반덤핑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재심절차를 통하여 문제의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의 강도를 약화시키거나 또는 철회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일단 관세 부과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도 재심 절차를 어떻게 개시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5) 반덤핑 조사의 도미노 효과

반덤핑 조사는 도미노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주요 수출국 시장 하나에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면 이는 곧바로 다른 수출국 시장의 조사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제3국의 조사로 또 이어지게 된다. 그 이유는 한 국가에서의 조사는 해당 수출물량이 다른 국가의 시장으로 전환될 수 있고 다른 수입국은 일종의 예방차원에서 동일한 상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할 유인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한 철강제품, 섬유제품, 화학제품 등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러므로 일단 주요 시장에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면 그 파장을 줄이기 위하여 수출물량을 곧바로 다른 국가로 전환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6) WTO 분쟁해결 절차 적극 활용

외국 조사당국의 반덤핑관세 부과에 대해 필요 시 우리 정부가 적극 WTO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할 것이라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이는 것이 조사의 공정한 진행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WTO 제소 여부는 정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반덤핑 조사를 받는 기업 입장에서조차 최종판정이 WTO 반덤핑협정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도출되는 경우 WTO 제소로 진행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조사 과정에서 조사당국에 지속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WTO 분쟁 경험이 적은 개도국의 조사당국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 어느 국가이든 WTO 피제소를 부담스럽게 느끼고 중요한 문제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7) 동시 제소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 모색

최근 반덤핑 조사와 상계관세 조사가 동시에 제기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무역구제 조사가 반덤핑 조사라는 측면을 감안하면 이러한 중복 제소의 경우 실제 목표는 반덤핑 조사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반덤핑 조사와 상계관세 조사를 함께 실시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이러한 중복 제소를 통하여 해당 수출기업이 반덤핑 조사에 대응할 만한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갖지 못하게 하여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이끌어 가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기업들의 경우 반덤핑 조사에만 대비하고 있는데 이제는 반덤핑 조사의 증가는 상계관세 조사 증가와 동시에 발현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양 조사에 공히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나. 상계관세 조사 대응 과정을 통한 시사점

상계관세 조사는 반덤핑 조사와는 달리 정부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도 동시에 진행되므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 체계적인 대비가 요구된다.

1) 정부와 기업의 효과적 협조체제

먼저, 반덤핑 조사와 달리 상계관세 조사는 정부와 기업이 모두 조사 대상이라는 점에서 양자간 철저한 조율과 협조가 필요하다. 동일한 조사를 받고 있는 정부기관과 수출기업이 제출한 답변서의 논리 전개에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기 때문에,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 간 사전 및 사후 조율이 필요하다. 또한 여러 부서가 동시에 관여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정부기관 간 사전 및 사후 협의도 필요하다. 문제는 이러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외국의 조사당국이 선의를 갖고 차이점을 보기보다는 이러한 차이를 답변의 부정확성을 확인하는 근거로 삼아 보조금협정 제 12.7조의 이용 가능한 정보(facts available) 원칙을 적용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판정을 도출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2) 이용 가능한 정보(Facts Available) 원칙 적용 가능성 최대한 회피

반덤핑 조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계관세 조사에서도 이용 가능한 정보(facts

available) 원칙의 적용은 현재 가장 민감한 이슈이다. 특히 하나의 수출기업만이 조사의 대상이 되는 반덤핑 조사와는 달리 상계관세 조사의 경우에는 다양한 정부기관이 관련되기 때문에 의도적/비의도적 비협조의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은 더욱 다분하다. 상계관세 조사에서는 반덤핑 조사에서보다 이 원칙 적용의 위험성과 파급효과가 크다. 따라서 여러 정부기관과 담당자가 관련된 상계관세 조사에서는 답변서 내용을 총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3) 프로그램 설명

최근의 상계관세 조사사례를 보면 정부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어렵고 또 긴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상계관세 조사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은 실로 다양하고, 각각의 정책과 제도는 지극히 복잡한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영어로 표기하여 외국 조사당국에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것이 때로는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의 대부분 법령이 WTO 협정에 합치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설명만 제시되면 우리 정부와 기업에 유리한 판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근래 충분한 설명이 제시되지 못해 우리에게 불리한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 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4) 현지 실사의 중요성

상계관세 조사에서는 특히 현지 실사가 중요하다. 현지 실사 과정에서 수많은 정부기관을 방문하고 담당자를 면담하고, 이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 제시를 통해 우리에게 유리하게 조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충분한 설명과 자료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와 기업이 제출한 답변서 내용이 부인될 위험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5) 양자협정의 중요성

상계관세 조사에 있어 최초 양자협정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보조금협정 제13조에 따라 상계관세 조사를 시작하는 수입국 조사당국은 반드시 수출국 정부와 양자협의를 개최해야 한다. 이러한 양자협정 과정을 통하여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조사

의 개시 여부 등 제반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양자협약이 특히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이 절차를 통해 잘못 제기되었거나 조사의 실익이 없는 정부 프로그램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지 말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사전 정리작업은 추후 1년간 진행되는 상계관세 조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된다.

6) 선례 활용 차단

상계관세 조사의 최종 판정문은 법원 판결과 같이 중요한 선례로 되어 후속 상계관세 조사와 다른 국가의 상계관세 조사에 지속적으로 인용 내지 활용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미국 상무부는 광범위한 상계관세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웹사이트를 통해 대외에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과 자료는 다른 국가들이 상계관세 조사 시 적극 활용하기도 한다. 이는 반덤핑 조사와 달리 상계관세 조사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일부 사안의 경우 해당 분쟁에서 중요하지 않을 경우 조사당국의 주장사항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또는 반대 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 인정 판정 자체는 그대로 남아 추후 다른 분쟁에서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다는 점을 간과하였던 것이다. 향후 상계관세 조사 과정에서는 판정 결과와 함께 판정의 파급효과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7) 상계관세 조사제도의 취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상계관세 조사와 관련한 논의 시 자주 대두되는 사항 중 하나는 조사당국의 정부도 유사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지원정책에 대한 조사가 부당하거나 상계관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심정적으로 주장할 수는 있지만, 법리적으로는 타당하지 않으며 용인되기 힘들다. 따라서 보조금 관련 영역에서는 단순히 우리가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국과 동일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안전하다고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8) WTO 분쟁해결 절차 적극 활용

반덤핑 조사와 마찬가지로 상계관세 조사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WTO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할 것이라는 의지

를 조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실제 문제가 있는 판정에 대해서는 WTO 분쟁해결 절차에 제소하여 판정을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3. 사법심사의 전문성 강화

향후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가 증가하는 상황을 상정할 경우 이와 동시에 이러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한 우리 법원의 사법심사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기관이 내리는 여타 행정결정 내지 행정조치와 마찬가지로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조치로 인해 피해를 볼 경우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 정부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서 행정소송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가 바로 반덤핑협정 제13조와 보조금협정 제23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법심사(judicial review)이다.

심리를 담당하는 우리 법원에서 무역위원회 및 기획재정부의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담당 판사는 문제의 반덤핑 조치 또는 상계관세 조치에 대하여 철회 명령을 내리게 된다. 물론 이러한 오류에 대해서는 다시 상급심에 항소가 가능하며 이러한 항소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오류가 확정될 경우 해당 조치가 철회될 뿐 아니라 그 시점까지 부과된 추가관세 역시 이자와 함께 납부자(수입업자)에게 환급된다.

우리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담당 판사는 문제의 반덤핑관세 조사나 상계관세 조사를 검토함에 있어 자신이 최초로 심리하는 자세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담당 판사는 오로지 무역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조사와 최종판정 과정에서 수집하고 검토한 증거가 해당 조치를 합리적으로 지지하고 있는지 여부만을 검토한다. 이는 행정부의 고도의 전문성을 사법부가 존중하는 원칙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극단적으로 관련 증거와 자료를 검토한 담당 판사가 자신이 조사당국이었다면 그러한 결정을(즉 반덤핑 부과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더라도 제시된 증거와 자료로부터 그러한 결정을 내릴 합리적 근거만 있다면 행정부의 결정을 용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우리 무역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최종판정이 우리 법원의 사법심사로 인하여 취소될 가능성은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상당히 희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법심사를 담당하는 우리 법원은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등」 우리 국내 법과 함께 이와 관련된 WTO 협정과 선례 역시 동시에 고려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위 일원주의 입장을 취하며 국제협정 역시 국내법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다. 그 결과 국내법을 적용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국내법원의 판사도 이미 국내법의 일부로 편입된 국제협정인, 가령 WTO 협정이나 FTA 협정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통상협정에 관하여 소위 이원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미국 또는 영국 등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미국 법원에서의 사법심사 과정에서 적용되는 법규는 오로지 미국 통상법이다. 물론 어떠한 국가가 일원주의를 취하든 또는 이원주의를 취하든 협정상의 의무의 범위에 하등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동일한 협정을 국내적으로 이행하는 기제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앞으로 우리 법원이 증가하는 사법심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법관의 확보 등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같이 이러한 사건만을 전담하는 법원의 설치는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최소한 이 분야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 법관의 확보가 장기적으로는 불가피할 것이다. 따라서 무역구제 제도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는 상황에서는 장기적으로 우리 국내 법원의 사법심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아울러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IV 기대효과

본 연구에서는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FTA 체제라는 새로운 통상환경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산업과 기업들이 공정한 무역환경 속에서 다른 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 운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우리나라는 미국, EU와 FTA를 체결하였고, 중국 등과의 FTA 체결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거대 경제권 국가들과 우리나라가 당당하게 교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무역위원회도 이에 걸맞게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무역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다 공정한 무역환경에서 다른 국가의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 관련 정책 시사점을

활용하여 앞으로 FTA 확대에 따른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배가시키면서 한편으로는 FTA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승호, 「일본-한국산 DRAM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사건 판례 소고」, 『국제거래법연구』, 제17권 제1호, 국제거래법학회, 2008, pp. 95~111.
- 박순찬, 「자유무역협정(FTA)과 반덤핑 발동에 대한 실증연구」, 『경상논총』, 제26권 제3호, 2008.
- 손태우, 「WTO 체제하의 미국 상계관세적용 방법론에 대한 법적 고찰」, 『법학연구』, 제48권 제1호, 2007.
- 송준현, 「일본의 대한국 상계관세조치 분석: 하이닉스 DRAM 사례를 중심으로」, 『관세학회지』, 제8권 제3호, 2007.
- 오문갑, 「한국의 반덤핑제도 운용전략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2권 제1호, 2011.
- 이재민, 「상계관세 조사와 현지 실사: 피조사국 정부 차원에서의 실무적 이슈를 중심으로」, 『국제경제법연구』, 제7권 제2호, 2009.
- _____, 『미국 상계관세 조사 대응 매뉴얼』, 외교통상부, 2012.
- 정동원 · 윤주환 · 김미경, 「최근 반덤핑조치 사례의 쟁점과 시사점 - 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 반덤핑조사 사건을 대상으로」, 『조세연구』, 제9권 제1호, 2009.

작성자 :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02-2186-2233)
이재민